

## 화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3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4. 4. 7

### 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 : 박광재 의원

나. 제안사유

- 의원 회기수당이 개정되었고, 타 시군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13조 별표 1중 일비 “50,000원”을 “70,000원”으로 개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회기수당이 개정되었고, 타 시군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현실에 맞게 “50,000원”을 “70,000원”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### 7. 불 입 : 화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“ 현행 ”

[별표1]

일비 및 여비 지급

구 분	액 수
일 비	50,000원
여 비	화순군 여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 구분상의 부군수 상당액

“ 개정안 ”

[별표1]

일비 및 여비 지급

구 분	액 수
일 비	70,000원
여 비	화순군 여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 구분상의 부군수 상당액